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(총리령 제2150호)

1.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총리령 제2150호)이 2026. 9. 1.자로 불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<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>

◇ 개정 이유

영업 허가·신고·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,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위생등급 지정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며, 영업허가증 등의 영업소 내 보관의무를 폐지하고, 식품접객업자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며,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수수료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◇ 주요 내용

가. **영업 허가·신고·등록 사항 변경 시 첨부서류 간소화**(안 제41조제1항·제3항,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3제1항·제3항)

영업 허가·신고·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하던 서류에서 허가증, 신고증 등을 삭제함.

나. **위생등급 지정에 대한 유인 강화**(안 제61조의3제5항, 안 별표 23 I 제15호카목 신설)

- 1)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출입·검사·수거 등의 면제 가능 기간을 '2년'에서 '3년'으로 연장함.
- 2)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.

다. **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**(안 제101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7)

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자, 식품접객업자 등으로 하여금 영업허가증 등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함.

라. **식품접객업자의 가격표 미게시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**(안 별표 23 II 제3호)

식품접객업자가 영업소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,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,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에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,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,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로 강화함.

마. **수수료의 합리적 조정**(안 별표 26)

- 1) 영업 허가·신고·등록 등에 대한 전자민원의 수수료 감면과 한시적 영업신고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함.
- 2)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수수료를 5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, 일부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에 대한 신규 신청 수수료를 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.

2. 동 개정법령은 2026. 9. 1.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총리령 제2150호) 1부.
2. (참고) 세부설명자료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신자 관계부처, 본부(61개 전부서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46개 전부서), 6개 지방청(54개 전부서), 지자체 및 관련 협회 등



주무관 손익재 연구관 홍정미 식품안전정책 전결 2026. 9. 1.
과장 최종동

협조자

시행 식품안전정책과-9844 (2026. 9. 1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처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014 팩스번호 043-719-2000 / sij0301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빛나는 발걸음, 새로운 길